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흠제 의원 외 19명

나. 의안번호 : 제2779호

다. 제출일자 : 2025. 5. 23.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사유

- 최근 대규모 시위 및 마라톤 등 행사로 인해 서울시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민 불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에는 이러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정상운행이 곤란한 상황

에 대비하여 예비 차량 확보,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책' 수립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자 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 및 도시 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에게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 신설)
- 나.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중교통 운행대책에는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기준,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시민 대상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19조제2항 부터 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6. 3. ~ 2025. 6. 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지역 재난의 수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재난수습주무부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실무반으로 교통대책반을 두어 필요한 비상수송 대책 추진, 교통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등을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음

1) 교통정책과-9003호('25.6.9.)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운행 차질에 대비하여 시장이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이하 “비상대책”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비상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한편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약 체결 및 시민홍보 대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과 내용 관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동 개정조례안 제19조제1항은 파업 등의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비상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은 비상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임

-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²⁾에 따라

2)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있고, 교통실의 경우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사고와 버스 및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³⁾을 운영 중인 한편 대규모 행사 등 상황에 따른 특별교통대책을 수립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조정 및 시민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대중교통 비상대책 현황을 고려할 때 시장의 비상대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와 비상대책 내용 등에 대한 동 개정 조례안 신설은 문제가 없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차질 우려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생략>

3) 교통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황

부 서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매뉴얼 현황	도시철도 사고, 고속철도 사고, 지하철 총파업	버스 총파업

4) 최근 3년간 특별교통대책 추진 현황 (단위:건)

연도	계	명절	자연재해	대규모행사
'22 년	14	2 (설, 추석)	2 (여름철, 겨울철)	10 (대통령 취임행사, 청와대 개방, 서울페스타, 광화문광장 개장, 서울세계불꽃축제, 달빛야시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제야의중 타종행사,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 겨울페스타)
'23 년	15	2 (설, 추석)	2 (여름철, 겨울철)	11 (부활절 퍼레이드, 여의도 봄꽃축제, 연등회, BTS 10주년 행사, 한강 불빛공연, 국군의날 시가행진, 서울세계불꽃축제, 한강 빛섬축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제야의 중 타종 행사)
'24 년	11	2 (설, 추석)	2 (여름철, 겨울철)	7 (부활절 퍼레이드, 여의도 봄꽃축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서울세계불꽃축제, 국군의날 시가행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야의중 타종 행사)

■ 대중교통 비상대책을 위한 협약체결 및 시민홍보 관련(안 제 19조제3항 및 제4항)

- 동 개정조례안 제19조제3항은 비상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시장이 관계기관 또는 교통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부득이한 상황으로 비상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구 및 과업에 동참하지 않는 운송업체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상대책 시행을 위해 필요시 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또한 서울시는 비상대책 수립 및 시행시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하고 있고, 시민홍보를 통해 비상대책 내용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 신설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